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20. 9. 24.(목) 조간부터

배포

2020. 9. 23.(수)

책임자

연구조정실
김해식 실장(3775-9041)

작성자

황현아 연구위원(3775-9047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담당역(3775-9115)

총 2매

보험연구원 『보험산업 진단과 과제(Ⅳ)-보험분쟁과 법제』 CEO Report 발간

“ 보험산업의 특성 및 분쟁 유형을 고려한 분쟁 관리·해결 방안 필요 ”

- ☐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은 『보험산업 진단과 과제(Ⅳ)-보험분쟁과 법제』라는 진단과 과제 시리즈 네 번째 보고서를 발간함(CEO Report 2020-07)
- ☐ 보고서는 보험분쟁의 현황을 분석하고, 합리적인 분쟁 관리·해결 방안 및 법제 개선사항을 제안함
- ☐ 보험은 계약의 특성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, 법리 발전 및 부당청구·보험사기 적발 등 분쟁의 순기능도 있음
 - 은행업·증권업에 비해 보험업 관련 분쟁건수가 많은 것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
 - 분쟁 건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,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
- ☐ 보험분쟁은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, 형사분쟁, 행정분쟁으로 구분됨
 - 민사(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분쟁), 형사(보험사기), 행정(행정제재)의 각 분야별 분쟁의 합리적인 관리·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, 분쟁의 특성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함
- ☐ (민사) 보험분쟁 중 가장 비중이 큰 ‘보험금 청구·지급 관련 분쟁’은 민사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음

- 민사소송의 경우, 보험금청구 1만건당 소송 0.8건이 제기되고 있고, 보험회사의 승소율은 일반 민사소송 원고승소율보다 높은 수준임
- 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소액 사건 분조위결정에 편면적 구속력*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임

*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

- 그러나,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, 분쟁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(예: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)에 대한 법리 발전 및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

□ (형사) 보험사기는 (i) 행정제재(등록취소·영업정지), (ii) 형사처벌(보험사기 및 관련범죄), (iii) 민사소송(보험금 환수)등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됨

-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,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
-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관련 분쟁의 종합적 근거법령으로 삼을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후, 체계에 부합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

□ (행정)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제재 근거 및 제재 수준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됨

- 행정제재 유형 중 “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(보험업법 제127조의3)”에 대한 제재의 경우,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
□ 보험분쟁에 대한 합리적 관리·해결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 정비 및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분쟁 관리 노력이 필요함

첨부: CEO Report “보험산업 진단과 과제(IV) - 보험분쟁과 법제”. 끝.